



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

일반인

(적용대상 아님)

- 친구, 가족, 연인 등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
- 퇴직한 은사님에게 드리는 선물
-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선물

금액
제한없음

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음

- 친족이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상급 교직원이 하급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동창회·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

100만원
이하

직무 관련 없음

- 친구,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없는 다른 교직원에게 주는 선물
- 직장 동료 교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

5만원
이하
(농수산물·
농수산가공품,
10만원)

직무 관련

(원활한 직무수행,
사교·의례
목적이 인정됨)

-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
- 각종 간담회,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
- 하급 교직원이 상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

제공
불가

직무 관련

(원활한 직무수행,
사교·의례
목적이 인정안됨)

- 상시적으로 평가·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에게 학생(학부모)이 드리는 선물
- 입찰, 계약,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
- 인사·평가,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



유치원 학부모



국민권익위원회 www.acrc.go.kr



국민권익위원회

Q 1 유치원 원장,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?

A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도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소속 원장, 교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.

Q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?

A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자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.

※ 공무수행자인은 '공무수행에 관하여'만 청탁금지법(부정청탁, 금품등 수수 금지)이 적용됩니다.

Q 3 생일날 등의 기념일에 원생끼리 과자나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된다?

A 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생끼리 선물을 주고 받아도 됩니다.

Q 4 유치원 운동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주는 식사나 다과를 받아도 된다?

A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식사나 다과를 받아도 됩니다.

※ 학부모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참석한 학부모 모두에게 주는 식사나 다과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
Q 5 유치원 원장·교사는 현장학습, 체험학습을 가는 날 학부모에게 교사용 도시락, 다과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?

A 유치원 원장·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
Q 6 담임교사가 결혼할 때 원생들(학부모)이 축의금을 제공해도 된다?

A 원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축의금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
※ 원생들이 불러주는 축가는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.

Q 7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,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도 된다?

A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.

Q 8 원생(학부모)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?

A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) 이하의 선물은 드려도 됩니다.

Q 9 다른 유치원으로 옮긴 담임교사에게 이전 학교의 원생(학부모)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?

A 다른 유치원으로 옮긴 담임교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(100만원 이하)을 드려도 됩니다.

Q 10 유치원 졸업식날 원생들(학부모)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?

A 졸업식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